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위해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3 중 “사업시행자”를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73
----------	-------

발의연월일 : 2025. 7. 15.

발 의 자 : 김도읍 · 박성훈 · 김미애
이현승 · 곽규택 · 정연욱
박수영 · 김대식 · 이성권
백종헌 · 김희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고난도 해상매립 공정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적기 완성을 위해서는 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위해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3(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u> <u>민에 대한 지원) 관계 시 · 도</u> <u>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u> <u>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u> <u>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u> <u>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u> <u>주민에 대하여 주민의 재정착</u> <u>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u> <u>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 시행</u> <u>할 수 있다.</u>